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10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정혜경·전종덕·박홍배

이훈기 • 민형배 • 윤종오

김태선 · 이학영 · 이재강

김남근 · 강득구 · 한창민

의원(12인)

제안이유

산재 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아직도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예술인 등은 산재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가 다치거나 아프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현행법 체계 안으로 포섭함(안 제6조).
- 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등을 현행법상의 근로 자 범주에 포함함(안 제91조의24 신설).
-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 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 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 우는 제외한다.
-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제8조제2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12개월 이내"를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직장적응훈련 비"로,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직장적응훈련"으로 하며, 같 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후단 중 "있다"를 "있으며, 근로자의 배치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장복귀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을 "사람을"로 한다.

제91조의16제2항 중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를 "노무제공자" 로 한다.

제91조의19를 삭제한다.

제3장의4에 제91조의22 및 제91조의2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업종 지정) 고용노동부장관 은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중 사업주가 「고용보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업종(이하 "신고의무업종"이라 한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업종을 지정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1조의23(노무제공자 등의 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이 법률상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울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제3장의5(제91조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5 예술인등에 대한 특례

제91조의24(예술인등)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제3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문화예술 등 인

- 적 용역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예술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2.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사용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
- ② 예술인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보험급여의 지급·플랫폼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2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노무제공자"는 각각 "예술인등"으로 본다.
- 제123조의2제1항 중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로 한다.
- 제1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3조의3(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 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②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이하 이조에서 "자원봉사자"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관

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	제6조(적용 범위) ①		
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다만, <u>위험률ㆍ규</u>	<u>다음</u>		
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	<u>각 호의</u>		
<u>통령령으로 정하는</u> 사업에 대			
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u><신 설></u>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		
	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u>한다.</u>		
<u><신 설></u>	<u>2. 「선원법」, 「어선원 및 어</u>		
	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u><신 설></u>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		
	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		

-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생략)
 - ② 위원회는 <u>근로자</u>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 ③ ④ (생 략)
-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7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 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 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u>직장적응훈련</u> <u>비 및 재활운동비</u>는 고용노동 부장관이 <u>직장적응훈련 또는</u> <u>재활운동</u>에 드는 비용을 고려 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

	표"라 한다)에 따른다.
제	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
	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u> 근로자(노무제공
	자 및 예술인을 포함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	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현행과 같음)
(2
	<u>해당 근로자의 퇴</u>
-	<u> 직시까지</u>
(③ <u>직장적응훈련</u>
-	<u> 비 직장적응</u>
-	훈런

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신 설>

④·⑤ (생 략)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이 조에서 "직장복귀계획서"라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 ④ 제1항에 따른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
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
<u>다.</u>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은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 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u>있</u> 다.

② ~ ⑥ (생 략)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 저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나. (생 략)

2. ~ 6. (생략)

·
<u>있으며,</u>
근로자의 배치전환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장복귀
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
의)
1
₁] 크 . ○
사람을
가.・나.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 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으로 본다.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①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재요양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노무제공자	
<삭 제>	

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노무제공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2항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보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저 휴업급여보장액(별표 1 제2호에 따라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91조의22(노무제공자 등에 대

<신 설>

한 신고의무업종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중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장수 등에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업종(이하 "신고의무업종"이라한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 지정・고시하여야 하며,신고의무업종을 지정변경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1조의23(노무제공자 등의 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이 법률상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울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 로 피보험자격에 관하여 확인 을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u><신 설></u> <신 설> 따른 확인 결과를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사업주 등 관계 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제3장의5 예술인등에 대한 특례 제91조의24(예술인등) ① 제5조제 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제3자를 사용하 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문화 예술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예술 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2.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사용자에 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
- ② 예술인등에 대한 보험급여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② ~ ⑦ (생 략)
<신 설>

의 산정기준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보험급여의 지급・ 플랫폼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91 조의17부터 제91조의2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 무제공자"는 각각 "예술인등" 으로 본다.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3조의3(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 ① 「자원봉사활동기본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원 봉사단체는 이 법의 적용을 받 는 사업주로 본다. ②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이하 이 조에서 "자원봉사자" 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

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급 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 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급 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 의 인정 기준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